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86호

2026년 전북민생솔루션 경영환경개선 모집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전북민생솔루션 경영환경개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3. 10.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모집 및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3. 10.(화) ~ 3. 27.(금) 18:00 ※ 기한 엄수
 - ※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분(도착 완료분)에 한함
- 신청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
 - 홈페이지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www.jbsos.or.kr) - [지원사업신청]
 - 우편, 방문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3층
 - 문 의 처 : 소상공인지원팀 1588-0700, 063-717-1315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5개사 정도
- 지원금액 : 기업 당 2백만원 (부가세 제외)
- 지원내용 :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경상적 지출
(전기공사, 간판, 어닝, 도배, 장판, 메뉴판, 조명 등)
 -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의 100% 지원
 - ※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수요자 맞춤형 통합 바우처방식 지원

※지원 금액 한도 내 여러 시공 분야가 지원 가능

예) 간판100만원 + 전기공사50만원 + 벽지50만원

○ 지원 가능, 지원 불가 항목

자본적 지출 [불가]	경상적 지출 [가능]
•자산성 품목 구매 불가(예:PC,TV,가스레인지,집기구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시설·공사·광고물 등 위법·불법 사항이 포함된 항목 지원 불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지붕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교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소모품 대체 •위와 유사한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관련규정: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 제1호, 2017.7.26.)

○ 제외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불입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불입2}
- ‘25년 경영환경개선 참여기업 중 기 지원받은 분야와 동일 분야
※전년도 기 지원받은 분야와 다른 분야는 신청 가능
- 선정 이전에 이미 시행한 경영환경개선 시공의 비용
- 비영리사업자 및 단체

3 선정기준

○ 평가방법 : 1차 정량평가(80점)+2차 정성평가(20점) 합산 고득점 순

- 1차 정량평가 :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2차 정성평가 :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최종 선정

○ 선정 결과 안내 : 2026년 4월 초 예정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www.jbsos.or.kr) 및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사업 중단 또는 포기 발생 시, 후순위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4 운영절차

① 신청접수 참여기업→진흥원 3월 10일 ~ 3월 27일	▶	② 서류평가 진흥원 (1차, 2차평가) 3월 30일 ~ 4월 3일	▶	③ 최종선정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4월 초
④ 협약체결 참여기업↔진흥원 4월 초 ~ 4월 9일	▶	⑤ 환경개선 및 중간점검 참여기업 내·외부 리모델링 및 진흥원 중간점검 4월 ~ 11월	▶	⑥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지급 검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순	제출서류	비 고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5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4년, '25년)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홈택스 발급)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선문의 063-210-6400)	
7	- 기타 증빙서류(선택) ① 재해직접피해 업체(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시군 지자체 발급)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③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문의 1588-0075)	가점항목

6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업체는 경영환경개선 완료 후 결과보고서,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시공비용은 부가세 포함하여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 신청
- 결과보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서식3]

순	제출서류	수량	비 고
1	결과보고서	1부	
2	사진증빙(공사 전·후 2매 이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시공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필요함) 단, 시공업체가 영세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 주의 : 시공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자 업종의 외주 시공업체 시공은 지원 불인정 현금 대면거래, 카드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 인정 불가	1부	
4	입금이체확인증 (입금자성명, 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확인이 가능해야함)	1부	
5	청구서(시공업체 발급)	1부	
6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1부	
7	신청업체 통장사본(입금받을 통장)	1부	
8	설문조사	1부	

- 신청(지원) 포기 및 취소
 -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청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 사업 변경
 - 시공분야의 추가 및 축소 등 주요 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 *사업변경 승인신청서[서식4] 등 기타 해당 서류 추가 제출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량평가 0점 적용
-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신청 업체에 귀속됨
-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 지원 불가
- 비용지급은 기업 선지출 후, 결과보고서 제출(증빙완료) 시 지원금 지급

붙임 1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유탐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익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익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